

#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정관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 1 조 (이름)

본회는 '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'(이하 학교연합이라고 한다)이라 한다.  
영문이름은 'Korea Association of Waldorf Schools(KAWS)'이다.

### 제 2 조 (목적)

- ① 본회는 한국 내 발도르프학교들의 연합기구로서, 한국 발도르프학교들의 협력과 상생을 목적으로 하며 발도르프교육 철학을 사회와 더불어 실천한다.
- ② 본회는 한국 발도르프학교의 인증기관으로서 발도르프학교의 정체성 확립을 돕는다.

제 3 조 (사업) 학교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- ① 회원 학교의 안정화를 위해 협력한다.
- ② 회원 학교간의 소통을 위해 일한다.
- ③ 회원 학교의 발도르프 교육과정 연구와 개발, 교사 양성을 지원한다.
- ④ 회원 학교의 인증규정을 수립하고 절차를 진행한다.
- ⑤ 국내 정부기관과 일반적인 교육자들에게 발도르프 교육을 연계한다.
- ⑥ 발도르프 교육을 홍보하고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.
- ⑦ 연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해 노력한다.

제 4 조 (소재) 학교연합은 한국에 소재한다.

## 제 2 장 회 원

### 제 5 조 (구성)

학교 연합의 구성원은 정회원, 수습회원으로 이루어지며 회원규정에 명시된 의무와 권리 및 기타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### 제 6 조 (권리)

- ① 정회원은 학교연합의 운영과 사업,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수습회원은 학교연합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 7 조 (의무) 정회원과 수습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.

- ① 정관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
-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
- ③ 학교연합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

- ④ 회비납부의 의무
- ⑤ (정회원) 인증규정에 따라 인증절차를 이행할 의무
- ⑥ (수습회원) 회원규정에 따라 회원가입 절차를 이행할 의무 (추가)

#### 제 8 조 (회원의 가입과 탈퇴)

- ① 회원의 가입은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.
- ②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탈퇴신청서를 탈퇴 요청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회비반환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 결산을 마감한 후 지급되며, 연회비 기납액에서 탈퇴일 기준으로 환산하여 반환한다.

#### 제 9 조 (자격상실)

- ① 정회원이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교연합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. 단, 수습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수습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.
- ② 해당 정회원은 회원 자격 상실사유 발생일로부터 총회 전까지 조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30일 전에 해당 정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## 제 3 장 조 직

### 제 1 절 총 회

#### 제 10 조 (총회)

총회는 학교 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.

#### 제 11 조 (총회의 소집)

- ①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1/4분기 중에 이사회가 소집한다.
- ②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1/3 이상의 요청으로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때 소집한다. (학교의 대의원은 교사1인, 학부모1인으로 한다.)
- ③ 이사회 의장은 총회 기일 30일 전에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안건을 포함한 최종 공지는 7일 전 까지 완료한다.

#### 제 12 조 (총회의 의결)
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① 예결산(회비승인 등) 및 중요한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- ②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보고

- ③ 정관개정
- ④ 이사회 선출과 해임
- ⑤ 정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
- ⑥ 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⑦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13 조 (총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)

-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의 2/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  - ② 총회의 결의는 대의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.
- 단, 필요시 출석 대의원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 14조 (의결권의 위임행사)

- ① 대의원은 대리자로 하여금 선거권 및 의결권을 위임 행사 할 수 있다.
- ② 피 위임자는 같은 학교 내 교사 혹은 학부모로서 대표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.
- ③ 피 위임자는 총회 개회 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한다.

제 2 절 기 구

- ① 학교연합은 이사회, 교사회, 학부모회, 학생회, 감사, 자문으로 이루어진다.
- ② 학교연합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.

제 15 조 이사회의 구성

학교 연합 이사회는 교사회와 학부모회의 추인을 받은 6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한다. 단, 교사이사의 수는 과반으로 한다.

제 16 조 (이사회의 권한)
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며 이사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
- ①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내규(규정 및 규칙)의 제정·개정
- ③ 회원의 가입 승인과 관리
- ④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의 집행, 관리
- ⑤ 대외 협력과 홍보 활동
- ⑥ 교육 활동 지원과 인증 절차의 진행
- ⑦ 총회 및 회칙에서 위임한 기타 사항

제 17 조 (이사회 임기) 이사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18 조 (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)

- ① 이사회 회의는 이사들이 요청할 수 있고 의장이 소집한다.
- ② 이사회의 2/3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.
- ③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의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.

단, 필요시 출석 이사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#### 제 19 조 (의장단)

- ① 의장단은 15조 1항에 의거하여 구성된 이사회 내에서 선출한다. 교사 이사 1인이 의장을 맡고 학부모 이사 1인이 부의장을 맡는다.
- ② 의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- ③ 의장은 학교연합을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관할한다.
- ④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, 차기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# 제 20 조 (감사)

- ① 연합의 행정감사 1인, 재정감사 1인을 둔다.
- ② 회원의 추천과 동의로 총회에서 승인한다.
- ③ 감사1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차기 감사가 선출될 때 까지 다른 1인이 직무를 대행하며, 2인 모두 수행할 수 없을 시 정기총회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대의원들의 의견 및 합의에 따른다.

#### 제 21 조 (자문)

- ① 학교연합은 법률, 재정, 교육 분야 등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자문을 둘 수 있다.
- ② 자문은 연합의 요청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다.
- ③ 회원의 추천과 동의로 총회에서 승인한다.

#### 제 22 조 (교사회)

- ① 학교연합 회원 학교의 교사들로 구성된다.
- ② 학교연합 교사간의 교류를 통한 한국발도르프 교육의 온전한 실천을 목적으로 삼으며 교육활동과 학교인증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한다.
- ③ 안건에 따라 각 학교 대표자 간의 (비)정기회의로 의견을 수렴한다.

#### 제 23 조 (학부모회)

- ① 학교연합 회원 학교의 학부모들로 구성된다.
- ② 학교연합 학부모간 교류를 통한 한국발도르프 교육의 온전한 실천을 목적으로 삼는다.
- ③ 안건에 따라 각 학교 대표자 간의 (비)정기회의로 의견을 수렴한다.

#### 제 24 조 (학생회)

- ① 학교연합 학생회는 학교간의 연합활동을 위한 모임을 결성할 수 있다.
- ②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학생회 활동의 주축은 상급과정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되, 전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.
- ③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학교연합에 제안할 수 있다.

## 제 4 장 회계와 재정

제 25 조 (회계연도)

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회계와 재정의 운용에 있어 학교연합의 재정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
제 26 조 (수입)

학교연합의 재정은 회비와 후원금, 특별기금으로 이루어진다

제 27 조 (회비)

- ① 모든 회원은 매년 1회 정해진 기간에 회비를 납부한다.
- ② 이하 세부사항은 학교연합 재정운영규정에 따른다.

## 부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회칙은 2021년 5월 1일 총회 통과 후부터 시행한다.

이 정관은 2022년 4월 10일 총회 통과 후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
제 3 조 각 조의 세부사항은 규정에 따른다.